

#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83
----------	------

제출년월일 : 2023. 6. .

제 출 자 : 성남 시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 조례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협의체 구성 당연직 위원의 소속과 직위 명확화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보조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근거 법 정정(조례안 제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 삭제(2017.10.24.)

나. 협의체 구성(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제3조 대표협의체: 위원 소속 부서 명시

- 교육문화업무담당국장, 주민자치과장, 고용노동과장 추가
- 3개 구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촉

※ 2023. 4. 18일자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의결에 따라  
“주민자치과”를“자치행정과”로“고용노동과”를 “고용과”로 변경 기재

- 제4조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 직위 명시

- 사회복지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등 관련 분야 팀장으로 명확화

- 제5조 실무분과: 공공위원 구성 범위 명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담당 팀장으로 개정
- 제6조 구 협의체: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 명시
  - 동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촉

다. 실효성 확보 (조례 제17조, 제21조)

- “의견의 청취(제17조)”를 의무 조항에서 협조 사항으로 변경
  -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21조)”는 협의체 사무 영역 외 내용으로 삭제
- 라. 협의체 운영 지원(조례안 제20조 제2항 신설)
-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관리함을 명시

개정 조례 안: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결과: 붙임(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결과: 붙임(원안동의)

규제심사검토결과: 붙임(원안동의)

## □ 입법예고결과

- 입법예고 기간: 2023. 3. 20.(월) ~ 2023. 4. 10.(월) (22일간)
- 의견제출자(부서): 광윤부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 의견내용: 심의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대표협의체만 의견청취가 가능하므로 심의에 필요한 이라는 내용을 삭제
- 검토결과: 반영

의견제출부서	입법예고 내용	의견	검토결과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광윤부)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b>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b>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에 필요 시 라는 단서조항을 필요한 경우로 변경</li> </ul>	<b>반영</b> ⇒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는 <b>필요한 경우</b>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수정구보건소장”을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수정구보건소장, 교육문화업무담당국장, 자치행정과장, 고용과장”으로, “위원장,”을 “위원장, 3개”로, “위원장 대표 1명, 동 협의체 위원장 대표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 책임자”를 “관련 부서 팀장”으로, “한다) 및 동 협의체 위원장 대표 1명”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동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

건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복 지 정 책 과
입 안 자	복지정책과장	김 순 신
	복지기획팀장	이 선 희
	주 무 관 ( 연 락 처 )	박 현 정 (729-283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 ----- ----- ----- ----- ----- -----.</p>
<p>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② (생략)</p> <p>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u>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수정구보건소장</u>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구 협의체 위원장 대표 1명, 동 협의체 위원장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④ (생략)</p>	<p>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u>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수정구보건소장, 교육문화업무담당국장, 자치행정과장, 고용과장</u> --- 위원장, 3개 --- 위원장-----.</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실무협의체) ①·② (생략)</p> <p>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p>	<p>제4조(실무협의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등 업무 책임자, 위촉직 실무분과 위원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 및 동 협의체 위원장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6. (생략)

④·⑤ (생략)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분과) ① (생략)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6조(구 협의체) ①·② (생략)

③ 구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 관련 부서 팀장 -----  
-----  
----- 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실무분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세부사업 담당 팀장은 당연직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구 협의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동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  
-----  
-----  
-----.

1. ~ 7. (생략)

④ ~ ⑦ (생략)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 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 지원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 ⑦ (생략)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생략)

<신설>

제21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시장은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동 협의체) ① -----  
-----  
----- 행정복지  
센터-----.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생략)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급여법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복지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성남017		
정책명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박현정	전화번호 031-729-72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근거 법 정정 및 구성의 명확화, 실효성이 없는 조항 정리 ○ 조례 근거 법 현행화, 협의체 구성 당연직 위원의 소속과 직위 명시, 협의체 사무 범위 외 내용 삭제, 예산보조 지원 근거 명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성남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승민/031-729-2925)

복지정책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	지방행정주사보	조혜미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23. 3. 1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원안동의		

# 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 리 번 호	2023-17 경기성남			
조례규칙명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소 관 부 서	기 관 명	경기도 성남시		
	부 서 명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담당자명	박현정	전화번호	729-2832
규제심사요청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14일			
검 토 내 용	<p>○ 개정조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p> <p>○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p>			
종합 검토 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 신설 · 강화되는 내용이 없는바, 원안 동의함.</p> <p>○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법 무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리나/031-729-8843)

복지정책과장 귀하